
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	
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	
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	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			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17년 1월 1일

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

김 종 서



유의사항

1.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2.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(내부와 외부)에 게시합니다.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